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1길 5,
우암빌딩 4층
[별지 제33호서식]

공증
인가 **법무법인 화평**

(전화) 02-591-6163~4
(팩스) 02-3478-2707

등부 2020년 제 8405 호

인 증 서

상 환 약 정 서

장원근(이하 채무자)은 휘문교우회(이하 채권자)로부터 사용승인 등 적법한 절차 없이 사용한 4.5억원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변제의 의무를 갖고 이미 상환한 내역과 향후 상환일정에 대해 아래 내용과 같이 약속합니다.

- 아 래 -

1. 채무총액 : 450,000,000원
2. 상환완료 : 110,000,000원
 - 1) 2020년 5월 6일 30,000,000원 (교우회 통장으로 입금)
 - 2) 2020년 5월 7일 70,000,000원 (교우회 통장으로 입금)
 - 3) 2020년 6월 15일 10,000,000원 (교우회 통장으로 입금)
3. 채무잔액 : 340,000,000원
4. 상환계획
 - 1) 금리 : 연 6.92%
 - 2) 상환일정 : 18개월 원리원금 균등 상환 (마지막 달 잔여금 일시납)

회차	상환일자	납입원금	대출이자	월상환금	대출잔금
1	2020년 9월	14,539,394	1,960,667	16,500,060	325,460,606
2	2020년 10월	14,623,237	1,876,823	16,500,060	310,837,369
3	2020년 11월	14,707,565	1,792,495	16,500,060	296,129,804
4	2020년 12월	14,792,378	1,707,682	16,500,060	281,337,426
5	2021년 1월	14,877,681	1,622,379	16,500,060	266,459,745
6	2021년 2월	14,963,476	1,536,585	16,500,060	251,496,269
7	2021년 3월	15,049,765	1,450,295	16,500,060	236,446,504
8	2021년 4월	15,136,552	1,363,508	16,500,060	221,309,952
9	2021년 5월	15,223,840	1,276,221	16,500,060	206,086,112
10	2021년 6월	15,311,630	1,188,430	16,500,060	190,774,482
11	2021년 7월	15,399,927	1,100,133	16,500,060	175,374,555
12	2021년 8월	15,488,734	1,011,327	16,500,060	159,885,821
13	2021년 9월	15,578,052	922,008	16,500,060	144,307,769
14	2021년 10월	15,667,885	832,175	16,500,060	128,639,884
15	2021년 11월	15,758,237	741,823	16,500,060	112,881,647
16	2021년 12월	15,849,109	650,951	16,500,060	97,032,537
17	2022년 1월	15,940,506	559,554	16,500,060	81,092,031
18	2022년 2월	16,032,430	467,631	16,500,060	65,059,602
19	2022년 3월 일시납	65,059,602	0	65,059,602	0

5. 연대보증인은 본 약정 이행에 관하여 채무자와 연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한다.

6. 채무자와 채권자는 1에서 5항에 해당하는 상환내용에 대하여 상호 확인하였으며, 이를 약정하기 위해 기명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6월 30일

채무자 장 원 근 (인)
주 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연락처 010-7

채권자 휘문교우회 회장 조태원 (인)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670-1
연락처 0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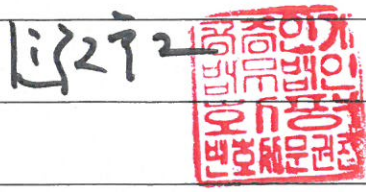
연대보증인 장 기 덕 (인)
주 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
연락처 010-

연대보증인 백 순 석 (인)
주 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연락처 010-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1길 5,
우암빌딩 4층
[별지 제35호서식]

공증
인가 **법무법인 화평**

(전화) 02-591-6163~4
(팩스) 02-3478-2707

등부 2020 년	제 8405호
인 증	
위 상환약정서 -----에 기재된	
채무자 장원근, 연대보증인 장기덕, 동 백순석, 채권자 조태원등의 대리인 전해진은 --- ----- -----	
본 공증인의 면전에서 위 사서증서의 기명날인 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였다. ----	
본 공증인은 위 촉탁인등의 대리인이 제시한 주민등록증----- ----- -----에 의하여 그 사람이 틀림없음을 인정하였다. -----	
촉탁에 관한 대리권은 본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였다. ---- ----- -----	
2020년 07월 06일 이 사무소에서 위 인증한다.	
공증사무소명칭	공증 인가 법무법인 화평
소 속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소재지표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1길 5, 우암빌딩 4층	
공증인 공증담당변호사	

사건위임계약서

위임인(갑) : 휘문교우회

수임인(을) :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현희

사건의 표시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보험료 반환
당사자 (원고)	휘문교우회	상대방 (피고)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

위 당사자들은 위 표시 사건의 제 1 심에 있어서의 사건처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목적] 갑은 을에게 위 표시 사건의 처리(이하 “위임사무”라 한다)를 위임하고 을은 이를 수임한다.

제2조 [위임한계] 갑이 을에게 위임하는 위임사무의 한계는 당해 심급에 한하고, 파기 환송된 사건이나 상소의 제기, 강제집행, 강제집행정지, 보전처분 등 부수적 절차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보전처분 사건의 경우, 이의사건 또는 취소사건은 보전처분 사건과 별개의 위임사무로 한다.

제3조 [수권범위] 갑은 을에게 따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위임장 또는 선임서에 적은 자격과 권한을 수여한다.

제4조 [수임인의 의무] 을은 변호사로서 법령에 정한 권리와 의무에 입각하여, 위임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 [자료제공 등] 을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자료 또는 조회한 사항에 대하여 갑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 [착수보수]

- 3,000 + 2,000 + 인의대 ?
송달료.
- ① 갑은 을에게 위임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착수보수 600만 원을 지급한다.
 - ② 제1항의 착수보수는 을이 위임사무에 관한 연구, 조사, 서면작성을 하는 등 위임사무에 착수한 후, 을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당사자의 소의 부제기 또는 취하, 상소의 부제기 또는 취하, 청구의 포기, 인낙, 소송상 화해, 조정, 소송물의 양도, 당사자의 사망 등의 경우에는 갑이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의 협의하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③ 을이 위임사무를 착수하기 이전이라도 을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갑의 일방적

214-82-(
휘문교우회
서울시 강남구 학동
309호(오창빌)
서비스 팽

인 위임계약 해지, 또는 제9조에 의한 위임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을이 입거나 입게 되는 손해 혹은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기로 한다.

- ④ 갑과 을이 합의로 위임계약을 해지 또는 을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당시까지 을의 변호사 및 전문보조인력들이 갑을 위하여 일한 일체의 시간(수임을 위하여 상담하거나 연구한 시간 포함)에 을이 정하고 있는 시간당 보수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착수보수에서 공제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 이를 반환한다.

제7조 [성과보수]

가. 성과보수

위임사무가 판결, 재판상 내지 재판외 화해(화해권고결정 포함), 조정(조정예 같은 결정 포함) 등으로 성공한 때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성과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

- ① 전부 승소한 경우 : 금 _____ 원(부가가치세 별도)
- ② 일부 승소한 경우 : 위 금액을 승소비율로 계산한 금액(부가가치세 별도)
- ③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금액의 _____에 해당하는 금액(부가가치세 별도) 승소로 인한 경제적 이익에는 본소의 승소로 인한 이익과 반소의 승소로 인한 이익을 포함하며, 판결 등에 의해 인정된 이자를 포함한다. 상대방이 청구취지를 감축한 경우에는 가장 높은 시점의 청구취지를 기준으로 하여 성과보수를 산정한다.
- ④ 상소심의 경우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상소심의 심판의 대상 전부를 기준으로 하여 승소 비율을 정한다.

나. 승소로 보는 경우 : 다음의 경우에는 승소로 보고, 위 기항에 정한 성과보수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① 을이 위임사무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갑이 임의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 소의 취하, 상소의 취하를 한 경우
- ② 을의 소송수행 결과로 인하여 상대방이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 소의 취하, 상소의 취하를 한 경우(상대방이 이러한 시정으로 청구취지 또는 항소취지를 감축하는 경우에도 감축된 부분에 관하여 성공한 것으로 본다.)
- ③ 을의 소송수행 결과로 인하여 소송대상인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거나 경정처분된 경우
- ④ 을이 위임사무 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임계약을 해지하거나, 제9조에 따라 을이 위임계약을 해지한 경우

다. 전항 제1호 사유 중 갑이 아무런 경제적인 이득 또는 기타 이득이 없이 청구의 포기, 소의 취하, 인낙, 상소를 취하한 때에는 을의 노력 및 업무 수행 경과를 감안,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성과보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비용부담]

- ① 을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예납금, 보증금, 등사료, 여비, 기타 필요한 실비는 그 전액을 갑이 부담한다.
- ② 갑은 제1항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금_____원을 예치한다.
- ③ 출장 일당으로 1일 금_____원을 비용 발생 때 지급한다.
- ④ 전항의 비용은 제2항의 예치금 중에서 충당할 수 있다.

제9조 【계약해지】 갑이 이 위임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임사무의 내용에 관한 진술이 허위인 때에는, 고의가 아닌 경우라도 을은 이 계약을 해지하고 사임할 수 있다.

제10조 【통지의무】 을은 위임사무의 중요한 처리상황 및 그 결과를 갑에게 통지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갑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보수지급의 지체】

- ① 갑이 이 위임계약에 정한 비용 또는 보수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을은 위임사무에 착수하지 않거나 위임사무의 처리를 중단하거나 사임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경우 을은 신속하게 갑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자료의 보관책임】 을이 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는 위임 종료시 갑에게 수령할 것을 통지한 후 3개월 내에 별다른 고지사항이 없을 경우 을은 이를 임의로 폐기할 수 있다.

제13조 【지급보장】

- ① 을은 이 위임계약에 정한 비용 또는 보수의 지급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갑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을은 갑이 제1항의 비용 또는 보수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련하여 보관하게 된 금전, 문서 또는 자료 등을 유치하거나 상계 처리할 수 있다.
- ③ 전항의 경우 을은 신속하게 갑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인장조각】 이 위임계약의 수행 상 필요한 경우, 을은 갑 또는 당사자의 인장을 조각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을은 사후에 인장 조각 및 사용 사실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비밀유지】 을은 업무상 취득한 갑의 모든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업무수행상 필요하거나 법적으로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이외에는 갑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6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갑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주체로

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에 따라 을이 위임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위임사무의 종료시까지 갑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법원과 수사기관 등 이 사건 관련 기관에 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다. 갑은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임사무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한다.

제17조 【민법과의 관계】 기타 위임사항에 관하여 이 위임계약서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이 정한 바에 의한다.

제18조 【분쟁해결】 이 계약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갑과 을은 협의를 통하여 우호적으로 이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우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서울지방법변호사회의 조정에 회부하기로 한다.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 특약사항**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각 1통씩 보관한다.

2020. 6. 26.

208
광고·홍보업



214-82-63731

갑(위임인) : 성	명	휘문교우회	휘문교우회 조태원	
		대표자 회장	조태원시 강남구 학동로 208 309호(오창빌딩)	
사업자등록번호	214-82-63731	서비스	광고·홍보업	
주 소	서울 강남구 학동로 208, 309호		(논현동, 오창빌딩)	
연 락 처	02-514-1906			
이 메 일	whimoonob1906@naver.com			

을(수임인) : 원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현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8길 8, 흥은빌딩 7층 [06233]
(전화 : 02-6953-0545, 휴대폰: 010-8078-2534, 팩스번호 : 02-6953-0546)

[입금계좌안내]

1. 소송수임료 : 하나은행 701-910415-32107(예금주 김현희)
 2. 업무예수금(인지대, 송달료 등) : 농협은행 302-1280-3884-61(예금주 김현희)
- ※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소송수임료와 업무예수금을 구분하여 각각 위 해당계좌로 입금하여 주시면 업무수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끝)

소 장

원 고 휘문교우회

서울 강남구 학동로 208, 309호 (논현동, 오창빌딩)

대표자 회장 조태원

원고 소송대리인 원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현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8길 8, 흥은빌딩 7층

(전화 : 02-6953-0545, 팩스 : 02-6953-0546, 우편 : 06233)

피 고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56 (여의도동, 미래에셋대우빌딩)

대표이사 하 만 덕

보험료 반환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63,642,880원 및 이에 대한 2019. 3.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

- 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휘문고등학교 총동창회로, 대표자의 선임 방법, 단체로서의 주요 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입니다(갑 제1호증 회칙).

소외 장원근은 원고의 사무국장의 지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피고는 생명 보험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갑 제2호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권한 없이 원고를 대리한 장원근과 “투자전문가의 변액연금(무)1812” 보험 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한 보험사입니다.

2. 원고의 보험료 반환 청구권

가. 원고를 대리한 장원근과 피고의 이 사건 계약 체결

2019. 3. 29. 당시 원고의 사무국장이었던 장원근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원고의 계좌에서 보험료 6억 원을 인출해서 피고에게 납입했습니다.

그러나 장원근은 이 사건 보험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작성 받아간 서류 또한 모두 장원근이 임의로 원고의 당시 대표자 회장 소외 백순석의 서명을 위조하여 날인했습니다.

나. 원고의 이 사건 계약 무효로 인한 보험료 반환 청구 및 피고의 일부 반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무효임을 원인으로 피고에 대하여 납입된 보험료 6억원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유지한급금(해약) 546,357,122원 및 위험보험료(해약) 88원 합계 536,357,120원만을 원고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63,642,880원은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갑 제3호증 해약지급증명서).

다. 소 결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보험료 63,642,880원의 반환 및 이에 대한 법정 이자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무효로 인한 납입 보험료 잔액 63,642,880원 및 보험료를 납입받은 2019. 3.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비율을 반환으로 원고가 납부한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입 증 방 법

- | | |
|-----------|-------------|
| 1. 갑 제1호증 | 회칙 |
| 1. 갑 제2호증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1. 갑 제3호증 | 해약지급증명서 |

첨 부 서 류

- | | |
|-----------|------|
| 1. 위 입증방법 | 각 1부 |
| 1. 소장 부분 | 1부 |

- | | |
|----------|----|
| 1. 소송위임장 | 1부 |
| 1. 납부서 | 1부 |

2020. 7. .

원고 소송대리인

원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 현 희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